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32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 : 윤영석 • 이종배 • 김태호

최형두ㆍ류성걸ㆍ이철규

강기윤 · 김도읍 · 이채익

박덕흠 • 구자근 • 윤상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특허를 신뢰할수 있어야 이에 대한 금융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벤처창업, 기술혁신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기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0~50%대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므로,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는 심사단계의 충실성 제고와 함께 특허무효심판에서 증거조사 강화, 구술심리 확대, 심판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심판관이 보다 충실하게 심 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고, 법원과 타 행정심판기관도 법관과 심판관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관, 재 판연구원, 재판연구관 등의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 원에도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두어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하여 특허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16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16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②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